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917	이만희의원	'24.10.25.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4.1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상정
	2210259	송옥주의원	'25.4.30.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6.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 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5.11.26.) 상정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에

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

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목적에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 도모를 추가함(안 제1조).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를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u>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아동 · 청소년 · 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u> ----- ----- ----- <u>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2. (현행과 같음)